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6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쪽수
2016-49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
2016-50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51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6-52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15
2016-53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6-54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3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49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5.10.21.시행)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상위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독립된 별도의 자체적인 목적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위임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영업장소와 신고서류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공연·전시·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역행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8. 01. ~ 8.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0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군수 직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글씨체의 식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의 모양, 인영 및 규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종류별 규격 변경(안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종류별 규격을 별표와 같이 변경

나. 공인의 인영 사항을 변경(안 제5조)

-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여 인영 선택의 폭을 넓히고
-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함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 제40조, 별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6. 20. ~ 7. 10.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조 제목 및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2항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무관리규정</u>」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① 공인의 인영은 <u>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u>,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u>관수자</u>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u>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u>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인 <u>관수자</u>) 공인의 종류별 <u>관수자</u>는 별표 2와 같다.</p> <p>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u>관수자</u>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날인은 공인 <u>관수자</u>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찍는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 ----- ----- -----</p> <p>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깔) ① --- <u>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u>,-----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u>보관자</u> ----- -----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u> -----</p> <p>제13조(공인 <u>보관자</u>) ----- <u>보관자</u>-----</p> <p>제14조(공인의 보관) ----- ----- <u>보관자</u>-----</p> <p>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u>보관자</u>-----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 <u>관수자</u>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u>별지 제7호서식</u>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16조(규칙)</u>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경우</u>-----<u>보관자</u>----- ----- -----<u>경우</u>----- -----</p> <p>③----- -----<u>별지 제5호서식</u>----- ----- -----</p> <p><u>제16조(준용)</u>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u>제17조(규칙)</u>----- -----</p>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공인의 구분	크 기
1. 군수 직인	<u>3.0</u> 정사각형
2.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가. <u>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u> 나. <u>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u>	<u>2.4</u> 정사각형 <u>2.1</u> 정사각형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 (하부조직의 장 포함)	<u>1.8</u> 정사각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부채관리관</u> 지출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나. 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	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5. 합의제기관의 공인 가. 합의제기관의 청인 나.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	<u>3.6</u> 정사각형 <u>3.0</u> 정사각형

[별표 2]

공인의 보관자(제13조 관련)

공인의 구분	<u>보관자</u>
군수 직인	공인업무담당장
전자이미지 공인	공인업무담당장
민원전용 군수 공인	민원업무담당장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소관업무담당장
보조기관의 직인	소관업무담당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소관업무담당장
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	소관업무담당장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2016년 보육사업 안내」), 대법원판례 등에 부합되도록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대상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12세 이하 저학년 보육

(변경)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 「영유아보육법」 제27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나.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함(안 제14조)

(현행) 원장은 60세,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57세

(변경)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 등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 2007추134 :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 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

다. 법제처 정비대상 및 규제개혁 대상 개정함(안 제9조 ~ 제11조)

○ 수탁자 의무 중 일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 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함

※ 상위법령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대법원판례 2007추134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7. 18. ~ 8. 08.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미반영)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이승진 등 33명	안 제14조 근무상한 연령 삭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60세로 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교직원 연령에 관한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하는 규정이 없음 - 대법원판례(2007추13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장과 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규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권리 제한으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되어 무효 - 따라서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함 	의견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2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12조로, 제18조·제19조를 제13조·제14조로, 제21조·제22조를 제15조·제16조로 한다.

제11조(종전 제14조의2)제2항 중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를 “임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p> <p>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p>	<p>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u>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u>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④ (생략)</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거창군 <u>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u>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8조(위탁운영기간) ----- ----- -----<후단 삭제></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생략)</p> <p>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9조(수탁자의 의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④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 권의 허용 4.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p><삭 제></p>
<p>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보육 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삭제 2012.11.28)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p><삭 제></p>
<p>제12조(임면) (생략)</p>	<p>제10조(임면)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장 : 60세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57세 <p>②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의2(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원장의 임기) ① (생략)</u> <u>② 임기</u>----- ----- -----<u>사람</u>----- -----<u>사람</u>----- -----</p>
<p><u>제15조(전보) (생략)</u></p>	<p><u>제12조(전보) (현행 제15조와 같음)</u></p>
<p><u>제18조 ~ 제19조 (생략)</u></p>	<p><u>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8조제19조와 같음)</u></p>
<p><u>제21조 ~ 제22조 (생략)</u></p>	<p><u>제15조 ~ 제16조 (현행 제21조제22조와 같음)</u></p>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2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구성: 14조문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교육장 설치·운영

다.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고제면 빼재로 2325

라.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백두대간의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발굴·보존·전시 등의 역할

마. 개관 및 휴관, 관람 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날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바. 입장료,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별표1·2)

○ 무료입장: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공무수행자, 거창군민, 국빈 등

사. 시설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별표 3)

아.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사용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별표 4)

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차.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카.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는 「거창박물관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2016년도 예산 55,573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6. 13. ~ 7. 0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호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하 “생태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32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교육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 시설의 역할
4. 생태교육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생태교육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생태교육장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생태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설 사용 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자는 예약 즉시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선·보수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시물 등의 기증)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시물 등의 취득 및 구입, 기탁 등에 관하여는 「거창박물관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장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입장료(관람료)					
	어 른		청 소 년·군 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전 시 관 (통합입장료)	2,000	1,000	1,000	500	500	200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 소 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린 이: 7세 이상 12세 이하 ※ 군 인: 하사 이하 군인 ※ 단 체: 20명 이상 						

[별표 2]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무료입장 대상(제6조제2항 관련)

무 료 입 장 대 상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1급 ~ 3급 장애인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군수와 사전협의를 완료된 경우

[별표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1층 (32.81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2층 (30.82제곱미터)	1일	성수기	70,000원	4인 기준
			비수기	50,000원	
교육 세미나실	3층 (81.55제곱미터)	4시간	50,000원		방송·영상장비 냉·난방, 의자비치
		8시간	100,000원		
		1일	150,000원		

※ 초과 사용료 부담기준

1. 숙박시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 나. 1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전액
- 다.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

2. 교육세미나실

-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 나. 1시간 초과 시: 사용료 전액

※ 이용시간

- 가.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로 한다.
- 나. 전시관 3층(교육세미나실): 그날 10: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별표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반환사유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서식]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시설명

[] 게스트하우스, [] 교육세미나실,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면사유

신청내용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손해배상금 등
- 관련조문: 제6조, 제8조, 제1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55.6	500	500	500	500	2,055.6
	소계(a)		55.6	500	500	500	500	2,055.6
세입	국세							
	지방세		-	50	70	90	100	310
	소계(b)		-	50	70	90	100	310
총 비용 (a-b)			55.6	450	430	410	400	1,745.6

3. 관련 의견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6년 하반기(10월 ~ 12월) 운영비: 55,573천원
 - 인 건 비: 22,840천원
 - 일반운영비: 32,433천원
 - 기 타: 300천원

작성자: 산림과장 이 응 록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3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규정 신설함(안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노력,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 근로자 등을 배제하지 아니함.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의2)

다.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13조)

-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행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6. 15. ~ 7. 05.

(나) 예고결과: 반영함(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제8조제1항)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산림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는 군에서 생산된 우수 건설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함(안 제3조6항, 제4조2항)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p> <p>⑥ <u>군수는 군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를 우선 고용하고,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 ----- -----</p> <p>② <u>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근로자 고용, 역외건설기계와 역외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u></p>
<p>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u>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u></p>	<p><u><삭 제></u></p>
<p>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8조(구성) ① ----- ----- ----- -----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3조(시행규칙)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군 발주 공사 참여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권장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 사용 노력 <p>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p>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4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법령체계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반환이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선함(안 제12조)
(현행) 반환할 수 있다.

(개정) 반환한다.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으로 삭제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다.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6. 24 ~ 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19조제1항)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내외”를 “이내”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기계관리담당”을 “농기계담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u>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12조(임대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② <u>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 ③ (생략)</p> <p>④ <u>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u></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u>이내</u>----- ----- -----<u>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u>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관리 담당으로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농기계담당</u> -----</p>
<p>제23조(준용) <u>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및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p>	<p><삭 제></p>
<p>제24조(시행규칙) (생략)</p>	<p>제23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주소				
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 운반	위 탁 운 반				
	출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입고	장 소	희망시간	거 리	요 금
			킬로미터	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제곱미터 (일 평)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4.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거창군수 (인)

임차자:

거창군수 귀하